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안으로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시장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5. 7부터 1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 임시국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사의 선임방법,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등 내부건제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와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졸업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03. 3월말로 시한만료 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인정 요건을 강화하였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허용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신설되는 공시사항은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영업양·수도,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 등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규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단,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금융(일반) 지주회사의 비금융(금융) 회사 주식소유 금지와 관련하여 2년간의 주식처분 유예기간을 인정하였다.

기타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한 사업자에 대한 법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집단 지정시 소규모회사(자산총액 70억원 미만)로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휴업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며,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한도 및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산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 전문은 본지의 부록(87면 이하)을 참고 바람.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시장경쟁의 촉진,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편, 소비자주권의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 4월 26일 오후 3시 세종로청사에서 고건 대통령권한 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년의 공정거래정책 성과로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와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시장개혁의 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경쟁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 내용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카르텔 엄단, 기업결합심사 강화 및 경쟁제한적 규제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6대 기업집단 및 7개 공기업을 조사하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항공사 마일리지 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놀이공원 음식물 반입허용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확대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장경쟁의 촉진

(1) 경쟁제한 규제의 획기적 개선

그 동안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이 다수 잔존하고 있어, 지난해 발굴한 174개 경쟁제한 규제 중 서비스산업 규제는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시책」과 연계하여 개선을, 비서비스산업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일괄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카르텔에 대한 근본적 대응

과점적 시장구조, 기업들의 동업자 의식과 정부부처의 행정지도 등으로 각 분야에 카르텔이 관행화 되고 있어 입찰담합 상시감시체계 보강 등 카르텔 적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카르텔 참여 유인을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며, 원자재부문, 소비자유통부문 등 카르텔이 상습화된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3)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 제고

독과점 폐해의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안전지대(Safety Zone) 설정,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 면제 등 기업결합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4) 새로운 분야의 경쟁제한행위에 적극 대처

전략적 제휴, 지적재산권, 배타적 유통망을 통한 봉쇄 등 새로운 형태의 진입장벽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하고, 정보통신 등 급속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며, 통신·전기·방송위 등 규제당국과 업무분담체계를 정립하여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산업 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2.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개편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타회사 주식보유 한도제)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졸업기준을 마련하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과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기업집단 계열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에 중대 변경이 있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며, 총수의 그룹지배를 보좌하는 구조본 등 그룹운영조직의 기능·비용분담내역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고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신설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회사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에 대한 유예기간 인정,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1년→2년),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50%→30%) 등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설립이 용이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 30%(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금융계열분리청

구제는 금년중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5) 부당내부거래 지속 감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이행 여부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직권 조사는 지양하되 구체적 혐의가 있는 그룹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 및 수시조사를 병행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교차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소비자 주권의 확립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표시·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중요정보고시제도를 보완하고,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실증하도록 하는 광고실증제도를 강화하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선불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대금 예치제도(escrow) 도입 추진, 다단계판매 분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업자의 중요정보 공개 유도 등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 도입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의 「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 도입 확대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제도를 확충하고,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문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정부기능 재조정 논의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입점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며,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5.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세계 공정거래위원장 협의체인 ICN 제3차 서울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난해 서울 유치가 결정된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ICN 총회시 멕시코와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금년중 미국과 협정 체결을 마무리 지었으며, 국제카르텔 발굴·조사 등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3년 업무혁신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업무혁신작업단」을 설치하여 업무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0대 혁신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업무혁신실무자문단」(Junior Advisory Board)을 구성·운영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하여 「종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포탈 지식경영 시스템」, 「해외경쟁정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관리·이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 ▶전직원 참여하에 인사예고제, 직위공모제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상임위원으로 발탁하기 위해 내부승진 관행을 깨고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제정하고 정책고객 관리·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이버 종합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지방순회 심판」 개최(부산, 대전), 심

판정 출석 시차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소재 기업 및 피심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공정위는 2004년도 ▶홍보, 일하는 방식, 사건처리절차 등 5개 분야에 「변화선도팀」을 구성하여 혁신추진체계를 보강 ▶일하는 방식과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한 업무의 질 제고 ▶고객 위주 행정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하여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업무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통신판매거래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등 구매안전을 위해 에스프로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04. 5. 10(월)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은 비대면·선불거래방식에 따라 인터넷사기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 및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5~6월중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선불거래방식 구매시 상품 미배송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들이 에스프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만,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였고, 둘째,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www.nospam.go.kr)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구매권유시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는 광고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로,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사업자가 고지토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거래 및 이에 따른 사후분쟁소지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약철회제한 사실을 사전

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외에도 공제계약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 구제 노력을 유도하였다.

또한,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공급서 교부의무를 삭제하고, 현재의 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도 인정하며, 계약내용에

약관이 직접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약관의 출처 및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다.

* 에스크로(Escrow,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 :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 전문은 본지의 부록('108면' 이하)을 참고 바람.

개정 하도급법령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04. 1.20.공포, 법률 제7107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지연이율고시를 개정하여 '04. 4. 21.부터 시행하였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압류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원)도 급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시

정조치유형별 하도급벌점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성이 성립된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치유형별 점수(0.5점)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벌점(1~0.5)을 부과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선금금,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율을 고시함에 있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기관 연체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위임내용에 따라 『선금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고시』를 개정하여 지연이율을 현행과 같이 연 25%로 고시하였다.



서울경쟁포럼에서 카르텔 제재 강화방안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여 전세계 50개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서울경쟁포럼은, 특히 연이어 열리는 ICN 제3차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의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쟁정책분야 저명인사들이 사회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서울경쟁포럼은 공정위가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국제경쟁포럼으로 주로 개도국과 체제전환국들이 관심을 갖는 토픽에 집중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경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동 포럼을 독일의 본 독금회의, 미국의 포담 독금회의와 함께 세계 3대 경쟁정책 국제포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울경쟁포럼에서는 개도국의 관심이 높고 실제 경쟁법 도입 집행시 문제가 되는 “경쟁주창의 유효성 제고 방안”, “자연독점산업에서의 경쟁도입 방안”, “효과적인 카르텔 규제방안” 이 세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제2세션에서 논의된 “자연독점 산업에의 경쟁도입”은 우리나라 전기,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 발표자인 KDI 남일총 교수는 전기, 통신, 가스 등 자연독점 산업에 경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기

업지배구조가 낙후된 대부분의 국가가 거대 자연독점 기업의 주식매각 및 민영화 이후 경영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 일본, 중국, 이태리 등도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독점 산업에서 경쟁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제3세션에서는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각국의 제도 및 경험을 논의하였는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사무엘(Graeme Samuel) 위원장은 카르텔은 경쟁법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호주는 카르텔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중임을 소개하고, 과징금 부과도를 획득이익의 3배 또는 기업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하고 부과도도 1천만 불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하여 Leniency Program을 더욱 활성화하고 Whistleblower의 보호강화와 아울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빈발하고 있는 국제 카르텔의 근절을 위해 경쟁당국간 협조와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한편, 제1세션은 ICN의 「역량강화 작업반」의 한 패널로 운영되며 “경쟁주창의 유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 발표자인 영국의 Roger Jones는 경쟁당국이 아닌 민간의 시각에서 효과적인 경쟁주창 방안을 제시하였고, 토론자로 나선 공정위 조



한국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쟁주창 노력을 정부내, 대민간, 조직내부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쟁주창의 효과성 제고방안으로 정책고객 사전지정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체제 확립을 제시하였다.

이번 서울경쟁포럼은 참석규모가 역대 최

고일 뿐만 아니라 경쟁분야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함으로써 세계 3대 국제경쟁포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아울러 우리정부의 시장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대한 외국인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 프랑스 공정거래당국과 협력강화 논의

제9차 한·불 경쟁정책협의회가 2004. 4. 19(월)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994년에 시작된 한·불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연1회 개최되어 왔으며, 주 경쟁정책에 관한 현안과 국제적 협력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금번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프랑스 측에서는 아겔스틴(Marie Dominique Hagelsteen) 경쟁위원회 위원장과 제니(Frederic Jenny)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양국의 최근 경쟁정책 동향과 주요 심결사례 등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었다.

공정위가 소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등에 대해 프랑스 측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공정위와의 양자협력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측은 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하였고, 향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시키기로 하였다.

경쟁당국간 양자협정이 체결되면 국제 카르텔 등의 조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환을 통해 법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가활용계층 소비자보호시책 추진방안

- 여행업 분야 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도 계층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중산층의 여가활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범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여행업 관련 분야에서의

실태조사를 4월~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본격적인 주5일 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중산층의 여행, 레저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 여행업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여행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행광고, 약관 사용실태 및 계약이행 관련 주요 여행사(주선업자 및 현지여행사),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공정거래법, 약관법 적용 필요성이 있는 범위반 사실에 대한 실

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따라 파악된 사항에 대한 관련 법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불공정약관 통용, 주요정보고시 미이행 및 허위·과장광고 사용,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며, 개정 약관법에 따라 표준약관 허위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적극 활용하고 범위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표준약관 제·개정 등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498개 사업자단체에 사건분석 서비스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회, 조합 등 전국의 498개 주요 단체에 대하여 사건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이후 처리한 1,466건의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분석한 결과 811건(55.3%)이 단순경미하여 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단체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금년 4월부터 전국의 주요 사업자단체 490개와 8개 경제관련 온라인 포럼에 “사업자단체 관련 사건분석”을 월1회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와 관련하여 처리한 사건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레미콘, 서점, 주류 등 13개 업종이 범위반으로 신고된 주요업종이며, 최근에는 태권도, 우유, 부동산 등 4개 업종에서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법 인식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기적으로는 1998년 IMF 이후에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이 100%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이나 국민들의 권리주체의식과 신고의식이 향상되었으나 그 동안 준정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되며, 또한 1,466건의 사업자단체 사건 중 카르텔행위가 872건(59%)으로 나타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법 인식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주요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사건분석 서

비스를 산하조합이나 지회에 송부하고, 회원사 교육에 이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상호협력 할 예정이다.

2004. 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5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4월중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5. 1. 현재 376개로 전월 대비 2개사가 감소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4. 1. 506개에서 2004. 5. 1. 현재 515개로 9개사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4. 1. 현재 884개에서 2004. 4월중 13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6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4. 5. 1. 현재 891개로 7개사가 증가하였다.

[2004. 4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4. 1.	편 입			제 외						증감	2004. 5.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진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8개)	378	-	1	1	1	2	-	-	-	3	2	376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33개)	506	1	11	12	1	2	-	-	-	3	9	515
합계(51개)	884	1	12	13	2	4	-	-	-	6	7	891

[2004. 4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3개사(회사설립 : 1, 주식취득 : 3, 기타 : 9)

◆ 제외 : 6개사(지분매각 : 4, 합병 : 2, 기타 : 4)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엘 지 전 선	세원가스관리(주)	서비스·도소매업	주식취득	-	-	-
케이티 엔지	영진약품공업(주)	의약품및동원료외 화공약품제조판매업	주식취득	-	-	-
	영진약품판매(주)	의약품판매업	기타	-	-	-
	태아산업(주)	판상업체제조업	주식취득	-	-	-
세아	(주)메트로호텔	관광사업	기타	-	-	-
	(주)메트로알이디	부동산개발사업	"	-	-	-
	(주)호텔그린파크	관광호텔사업	"	-	-	-
	세풍개발(주)	조림업	"	-	-	-
	모아스틸(주)	고철도소매	"	-	-	-
	로얄관광개발(주)	국내여행알선업	"	-	-	-
	누비스타(주)	경영자문	"	-	-	-
태 광 산 업	(주)태광시스템즈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판매업	회사설립	-	-	-
삼 양	삼중투자(주)	석유화학사업의 해외투자업	기타	-	-	-
현 대 자동차	-	-	-	이에이치디닷컴	컴퓨터설계·자문업	피합병
금호아 시아나	-	-	-	아시아나공항서비스(주)	항공운수 지원서비스업	지분매각
두 산	-	-	-	(주)윌러스	시스템통합사업	지분매각
현대산 업개발	-	-	-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주)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업	피합병
동 양 화 학	-	-	-	군장에너지(주)	열병합발전업	지분매각
하나로 통 신	-	-	-	(주)엠커머스	이동전화관련 컨텐츠개발·제공등	지분매각